감사인 유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Auditor Types to Audit Quality: Case of Enterprises in Jeju Area

고 영 민* · 김 동 욱** · 정 순 여***

(Ko, Young Min · Kim, Dongwuk · Jung, Soon Yeo)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
Ⅴ. 결론

Ⅰ. 서 론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는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전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재무제표는 외부의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회계감사(auditing)과정을 거쳐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전달된다.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재무제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1] 경영자의 투명한 회계처리와 함께

*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1) 회계투명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 왔던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에 Enron, Global Crossing,

회계감사인의 성실한 감사가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경영자와 정보이용자 간의 정보불균형(asymmetry of information)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감시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외부 감사인이 제공하는 감사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2] DeAngelo(1981)는 감사품질을 재무제표에서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할 확률(전문성)과 이를 보고할 확률 (독립성)의 결합 확률로 정의하고 있는데,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은 감사품질이 낮은 감사인보다 회계 상의 중대한 오류나 부정행위를 적발할 능력과 이를 보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 행위가 억제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증대될 것이다.

그러데,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발생할 것인가? 감사인 규모가 감사품질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감사인의 규모에 상관없이 감사품질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에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시 따라야 할 회계감사기준과 감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3]. 따라서 전문가로서의 감사인의 자격, 기준, 감사절차 등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한 감사의 품질은 감사인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아닌 법규정으로 감사인의 규모에 근거하여 감사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감사인의 규모에 기초한 업무범위 제한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견해이다. DeAngelo(1981)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감사인의 전문성이 높고, 독립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주장하였다. 감사인 규모가 크고 명성이 높은 대형회계법인일수록 감사실패에 대한 명예훼손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품질의 감

Worldcom, Merck 등의 기업에서 행한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의회는 2002년 Sarbanes-Oxley Act(SOX)을 제정하여 기업과 임원의 책임강화,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및 감사인의 책임 강화를 통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 차별적 감사수요이론에 의하면 감사인은 높은 품질의 감사인과 낮은 품질의 감사인으로 차별화 되어 있으며, 수요자인 기업도 높은 품질의 감사인을 선호하는 기업과 낮은 품질의 감사인을 선호하는 기업으로 차별화되어 있다(Francis et al., 1999).

3) 회계감사기준은 감사대상기업과 일반대중이 감사인이 달성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최소한의 수준의 감사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후적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함으로써, 공인회계사가 감사 시 실시하여야 할 감사절차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여 회계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 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대규모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회계감사의 품질이 소규모 회계법인의 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견해를 지닌다.

그 동안 외부감사수임제한을 둘러싸고 감사반과 회계법인, 규모가 다른 회계법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조정과정을 거쳐왔다. 과거 감사인 조직형태별 자산규모에 따른 제한은 회계법인의 경우 소속공인회계사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는 제한이 없었고, 소속 공인회계사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8000억 원 미만인 회사를 감사할 수 있었으며, 감사반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 원 미만(계속감사인 경우 500억 원 미만)인 회사만 감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외감법 시행규칙을 개정(1999. 7. 2, 재정경제부령 제100호)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 제한제도를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감사인의 업무수임준칙을 폐지했다. 외감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대상회사 자산규모 제한 연혁은 <표 1-1>과 같다.

<표 1-1>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회사 자산규모 제한 연혁

구분		1994. 3	1998. 6	2000. 7	2003. 6
회계법인	50인 미만	3000억 원 미만			폐지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00억 원 미만	8000억 원 미만	8000억 원 미만	
	100인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합동회계사무소*	14인 미만	1000억 원 미만			폐지
	14인 이상	1000억 원 미만			
감사반*	초도 감사 시		300억 원 미만	500억 원 미만	폐지
	계속 감사 시	200억 원 미만	500억 원 미만	1000억 원 미만	

주)합동회계사무소 : 1997년 12월 31일 폐지, 감사반 1990년 3월 21일 신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 많은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국외기업들도 활발하게 제주로 이전·설립

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도 외부감사인의 유형을 선정하는데 있어 감사품질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제주지역의 감사시장 현황을 감안하여 감사인 유형구분에 감사반을 추가하여 감사품질(audit quality)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 대형회계법인과 제휴한 감사인(Big4)이 감사한 기업과 그 의외의 감사인(Non Big4)이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을 비교하여 감사인 유형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두 번째, 타 시도와는 달리 감사반이 높은 감사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도내 감사시장 현황을 감안하여 감사인 유형을 Big4, Big4이외의 회계법인, 감사반으로 세분화 시켰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결과는 제주에 이전 설립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기업들도 감사인 선택 시 유용한 정보로 사용 할 수 있고,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사인들에게 고품질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감사인 유형에 대한 연구

일반적으로 감사인 유형에 따른 감사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에서는 감사인 유형을 외국 대형회계법인(Big4)과의 제휴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실제로 Tech & Wang (1993), Becker et al.(1998). Francis et al(1999), Becker(1998), Bartove(2001)의 연구에서는 Big5(현재는 Big4) 와 Non Big5 간의 감사품질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대형회계법인(Big4)을 사용하는 것은 Big4가 감사인 규모를 나타내주는 측정치이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대형회계법인은 고도의 감사기법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할 확률이 높아 감사인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형회계법인은 그렇지 않은 회계법인보다 피감사인 즉, 고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4] 따라서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전문성과 독립성이 증가하여 감사품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김문철과 황인태, 1998).

박종일, 이명곤과 원정영(1999)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감사인 유형별 감사품질을 측정하였는데 감사인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다음의 5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유형은, 김문철과 황인태(1998) 분류 방법인 미국 대형회계법인 Big6와의 제휴 여부,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한 피감사회사의 수를 이용하여 국내 대형회계법인(Local Big), 합동회계사무소(Local .Small)로 구분하였다. 위의 3집단 간의 감사품질의 차이를 ANOVA로 검증한 결과, 감사품질에 서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감사품질 면에서는 김문철과 황인태(1998)의 연구와는 상반된 Big6와 Local Big의 감사품질이 Local Small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 유형은, 정문종(1996)의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산업별 전문감사인과 그 이외의 감사인으로 감사인 유형을 구분한 후 두 집단 간의 재량적 발생액을 비교하였다. 두 집단 간에는 t-검증과 Wilcoxon-부호순위 검증에서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전문 감사인 보다 기타 감사인이 감사한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적게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은 금융감독원의 감사인 평가등급에 따른 1등급 감사인과 2등급의 감사인으로 감사인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감사인 간에는 t-검증에서만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2등급의 감사인이 감사한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적게 나타났다.

네 번째 유형은, 연구대상 기간 중 특정회계법인이 산업별로 감사한 감사대상 회사 수, 즉 산업별 시장 점유율 1위~3위 감사인과 그 외 감사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인간의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1998년 3월말 현재 금융감독원에 보고 된 회계법인 별 사업보고서의 자산총액,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평균감사수임료 등의 현황을 이용하여 1위~5위 감사인과 그 외 감사인으로 감사인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인간의 재량적 발생액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피감사인을 많이 보유하면, 그 감사인의 총수입에서 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따라서 어느 한 기업의 부당한 회계처리를 눈감아 주고, 그 기업을 고객으로 유지함으로써 얻는 수익보다 장기적으로 다른 잠재고객을 잃어버림으로써 상실하는 비용이 더 크게 된다. 때문에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독립성이 향상된다(DeAngelo 1981).

2.2. 감사품질에 대한 연구

앞서 얘기했듯이, 감사품질은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 할 수 있는 가능성(전문성)과 발견된 오류를 보고할 가능성(독립성)의 결합확률로 정의된다(De Angelo, 1981). 일반적으로 높은 품질의 감사인은 보다 효과적인 감사기법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오류 가능성이 있는 회계추정 등을 방지하거나 발견하여 오류나 부정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제로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감사품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감사품질을 분석하여 왔으며, 그 결과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최국현(2007)은 대형회계법인(Big5)회계법인과 제휴하고 있는 Big5 감사인과 국내 Local Big 감사인, 기타 감사인으로 구분하고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재량적 발생액을 감사품질로 대용하였다. 연구 결과 재량적 발생액은 Big5 감사인이 Non Big5 감사인에 비하여 높은 품질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ig5 감사인과 Local Big 감사인 간 재량적 발생액은 제한적인 차이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ocal Big 감사인을 대형 감사인으로 분류하여 Big5 감사인과 더불어 대형 감사인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에 기타 감사인에 비하여 높은 품질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이는 Local Big 감사인 Big5 감사인에 상응하는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의 경우, 감사인 유형간 차별적 감사품질을 검증함에 있어 Big5 감사인과 Non Big5 감사인을 사용하는 것보다 국내 감사인의 특성 및 감사시장 실정에 맞는 감사인별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감사인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황인태 등(2008)에서는 감사수입비중이 제한적이고, 조직형태에 한계가 있는 감사반의 경우 회계법인에 비하여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감사반의 감사품질이 회계법인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g4가 다른 회계법인보다 질 높은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피감사기업은 5,000억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주력감사시장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각 감사인마다 차별화된 주력감사시장이 존재하는 국내 감사환경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최적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감사인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며, 국내 선행연구에서 모든 기업규모에 대하여 Big4 감사품질의 우월성이 일관되게 증명되지 않는 이유를 제공해 준다.

Ⅲ. 연구설계

3.1.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인의 유형에 따른 감사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의 크기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주체를 말한다. 회계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만약회사실 감사보고서가 발행된다면 그 파급효과 또한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회계법인뿐적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공인회계사회계 광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특한 형태로써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중간단계인 감사반도 감사인의 한 형태이다.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정의는 다음 <표 3-1>과 같다(노준화, 2003).

<표 3-1> 감사인의 종류

감 사 인	내 용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동안의 연수과정(1,2년)을 거친 후 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회계법인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공인회계사인 이사 3인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감사업체를 말한다.
감사반	감사반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업체를 말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상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감사반이며, 외감법 제3조 1항에서는 감사인별로 감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및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만이 감사할 수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모두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감사반도 감사인이 될 수 있다. <표 3-2>는 2008년 12월 현재의 감사인 현황을 보여준다.

<표 3-2> 감사인 현황(2008. 12. 31현재)

구 분	회 계 법 인		감 사 반	
	감사인수	구성원수	감사인수	구성원수
100인 이상	8개	4,705명		
50인 이상	6개	404명		
10인 이상	87개	1,697명	6개	70명
10인 미만	2개	18명	252개	1,127명
총 계	103개	6,806명	258개	1,197명

회계법인은 소속공인회계사가 일정규모(현재 10인) 이상이어야만 설립이 가능하며,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한편, 감사반은 3인 이상의 개인공인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공인회계사는 별개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갖고 공인회계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외감법에 의해 회계감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반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이효익 2008). <표 3-3>은 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비교하고 있다.

<표 3-3>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비교

구분	회계법인	감사반
회계사수	10인 이상	3인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	없음
감사가능회사	모든 회사	상장회사 및 연결·결합재무제표 그리고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는 제외
책임범위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는 유한회사)	감사참여 공인회계사가 연대책임

<표 3-4>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제주도내 본점을 두고 있는 피감사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법인별 피감사 회사의 분포를 조사한 표이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Big4와 제휴관계에 있는 회계법인의 피감사 회사 수는 17개, 기타회계법인의 피감사 회사 수는 37개 그리고 감사반의 피감사 회사 수는 27개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 2008년 12월 31일 현재 감사인별 제주도내 피감사 회사 수

등록일자	구성원수	감사인명	피감사회사수	비율
1971.03.21	1,957	삼일회계법인*	9	11.1%
1994.03.28	643	삼정회계법인*	3	3.7%
1987.02.14	918	안진회계법인*	3	3.7%
1982.03.25	526	한영회계법인*	2	2.5%
1970.01.13	169	신한회계법인	9	11.1%
2007.08.22	10	진성회계법인	1	1.2%
1995.02.16	206	대주회계법인	6	7.4%
1976.08.19	186	삼덕회계법인	2	2.5%
2004.03.25	15	청안회계법인	4	4.9%
		기타회계법인	15	18.5%
1994.11.07	4	162호감사반	11	13.6%
1996.10.28	6	229호감사반	13	16.0%
		기타감사반	3	3.7%
합계			81	100%

주) * : Big 4를 말함

감사반의 경우 총수입에서 감사로 인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고 조직구조상 한계로 인하여 감사품질이 회계법인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추론되어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인의 규모와 감사품질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선행연구(Francis et al. 2002)는 회계정보, 특히 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을 측정하기 위한 대용변수로서 재량적 발생을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다음의 5가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Big4의 재량적 발생액은 기타회계법인+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낮다.

[가설 2]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Big4의 재량적 발생액은 기타회계법인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낮다.

[가설 3]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Big4의 재량적 발생액은 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낮다.

[가설4]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기타회계법인의 재량적 발생액은 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낮다.

[가설5]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Big4 +기타회계법인의 재량적 발생액은 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낮다.

3.2. 연구모형

3.2.1. 감사품질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을 두 가지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기본적으로 수정된 Jones 모형을 이용하여 회귀식을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모형은 다음 식(1)과 같다. 재량적 발생액은 식(1)의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잔차항을 의미한다.[5]

수정 Jones 모형 $DA1$:

$$TA_{it}/A_{it-1} = \beta_0 + \beta_1((\triangle REV_{it} - \triangle AR_{it})/A_{it-1}) + \beta_2(PPE_{it}/A_{it-1}) + \xi_{it} \quad \cdots\cdots (1)$$

위 식에서

TA_{it} : 기업 i의 t년도 발생액(Accruals=NI-CFO)

A_{it-1} : t-1 기말의 총자산 장부가액

$\triangle REV_{it}$: t 기간의 매출액변동

5) 식 (1)에서 좌변의 총 발생액 중 연도별·산업별로 추정된 우변의 비재량적 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 잔차항이 재량적 발생액이다.

ΔAR_{it} : t 기간의 매출채권변동

PPE_{it} : t 시점 설비자산 장부가액

ξ_{it} : 각 회귀식의 오차항

추정모형2는 수정된 Jones 모형에서 TA_{t-1}를 통제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하였다. Dechow et al.(2003), Phillips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수정된 Jones 모형을 다시 보완하여 전향적인 모형(Forward-looking model)로 설계하였는데 위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에 TA_{t-1}를 포함되었다. 이는 TA_t가 TA_{t-1}의 영향으로 반전가능성이 높은 시계열 특성이 있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동일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수정 Jones 모형의 독립변수에 TA_{t-1}를 추가하여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모형2를 설계하였다. 그 구체적인 모형은 다음 식(2)과 같다.

TA_{t-1}추가모형 $DA2$:

$$TA_{it}/A_{it-1} = \beta_0 + \beta_1((\Delta REV_{it} - \Delta AR_{it})/A_{it-1}) + \beta_2(PPE_{it}/A_{it-1}) + \beta_3(TA_{it-1}/A_{it-1}) + \xi_{it} \quad \cdots\cdots\cdots (2)$$

3.2.2.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감사품질과 재량적 발생의 크기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감사품질을 이원화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에 의한 다변량분석 결과가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통해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모형설계는 다음과 같다.

$$DA_{it} = \beta_1 + \beta_2 AUDITSIZE_{it} + \beta_3 OCF_{it} + \beta_4 ABSTAC_{it} + \beta_5 OPN_{it} + \beta_6 SIZE_{it} + \beta_7 DEBT_{it} + \beta_8 LIQUID_{it} + \beta_9 ROA_{it} + \beta_{10} LOSS_{it} + \beta_{11} CHGSALE_{it} + \xi_{it} \quad \cdots\cdots\cdots (3)$$

여기서,

$DA1_{it}$: 수정 Jones 모형에 의해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

$DA2_{it}$: 수정 Jones 모형에서 TA_{it-1}를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AUDIT\ SIZE_{it}$: 감사인 규모 더미변수 (대형회계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OCF_{it} : 영업현금흐름/전년도총자산

$ABSTAC_{it}$: 총 발생액의 절대값/전년도총자산

OPN_{it} : t년도 감사의견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SIZE_{it}$: t년도 기업규모 (자산총액의 로그값)

$DEBT_{it}$: t년도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LIQUID_{it}$: t년도 총자산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ROA_{it} : t년도 총자산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산)

$LOSS_{it}$: t년도 순손실이 발생된 기업이면 1, 아니면0

$CHGSALE_{it}$: t년도 매출액증가율(당년도매출액/전년도매출액)

위의 식은 2개의 재량적 발생액 추정모형에 의해 계산된 $DA1$, $DA2$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업현금흐름외의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9개의 변수들을 통제하면서 감사인규모($AUDIT\ SIZE_{it}$) 더미에 회귀한 것이다.[6] [가설 1]~[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하여 ($AUDIT\ SIZE_{it}$)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정의된다.

가설 1의 검증 : $AUDIT\ SIZE_{it}$ - Big4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가설 2의 검증 : $AUDIT\ SIZE_{it}$ - Big4이면 1, 기타회계법인이면 0

가설 3의 검증 : $AUDIT\ SIZE_{it}$ - Big4이면 1, 감사반이면 0

가설 4의 검증 : $AUDIT\ SIZE_{it}$ - 기타회계법인이면 1, 감사반이면 0

가설 5의 검증 : $AUDIT\ SIZE_{it}$ - Big4+기타회계법인이면 1, 감사반이면 0

3.2.3. 연구표본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감사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표본기업이 선정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System)을 이용하여 감사인을 확인하고, 한국신용평가정보의

6) $DA1_{it}$: 수정 Jones 모형에 의해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

$DA2_{it}$: 수정 Jones 모형에서 TA_{it-1}를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KIS-Value를 통해 재무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다. 또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의 이용가능성 때문에 회계자료를 구할 수 없는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표본은 총 332개 기업/연도가 선정되었다. <표 3-5>와 <표 3-6>은 최종 선정된 표본 수를 보여준다.

<표 3-5> 최종 선정 표본

구분	표본수
전체 제주도내기업 (12월 결산법인, 금융업종 및 투자전문회사제외)	357
감사미필기업 및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	-25
최종 선정기업	332

<표 3-6> 감사인별, 연도별 최종 표본기업 수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비율
Big 4[1)]	10	11	14	18	17	70	21.1%
기타회계법인	27	28	33	32	37	157	47.3%
감사반	15	17	19	27	27	105	31.6%
합 계	52	56	66	77	81	332	100%

주: 1) Big4 회계법인은 삼일, 한영, 삼정, 안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Ⅳ.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

4.1. 가설 1 - Big4와 Non Big4의 회귀분석 결과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Big4와 Non Big4를 비교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 4-1>에 보고한다. <표 4-1>은 감사인 유형이 Big4인 기업은 "1", 그렇지 않은 기업은 "0"으로 표시한 감사인 유형변수 AUDIT SIZE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UDIT SIZE가 DA1과 DA2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Big4와 Non Big4의 재량적 발생액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1]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표 4-1> Big4와 Non Big4 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예상부호	모형1	모형2
		DA1	DA2
AUDIT SIZE (감사인 규모)	-	-0.023	-0.014
		-(0.601)	-(0.353)
OCF (영업현금흐름)	-	-0.132	-0.139
		-(2.761)***	-(2.726)***
ABSTAC (총발생액)	-	0.018	0.027
		(0.494)	(0.727)
OPN (감사의견)	-	-0.016	-0.008
		-(0.481)	-(0.229)
SIZE (기업규모)	+	-0.001	-0.009
		-(0.035)	-(0.224)
DEBT (부채비율)	+	-0.013	-0.016
		-(0.386)	-(0.461)
LIQUID (유동비율)	-	0.073	0.071
		(2.238)**	(2.143)**
ROA (총자산영업이익률)	+	0.192	0.194
		(5.429)***	(5.403)***
LOSS (당기순손실여부)	+	-0.146	-0.148
		-(3.970)***	-(3.966)***
CHGSALE (매출액증가율)	+	-0.156	-0.159
		-(4.696)***	-(4.735)***
수정 R^2		0.419	0.408
(F-값)		(12.348)***	(12.125)***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속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t-값이다.

4.2. 가설 2 - Big4와 기타회계법인의 회귀분석 결과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Big4와 기타회계법인을 비교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 4-2>에 보고한다. <표 4-2>는 감사인 유형이 Big4인 기업은 "1", 기타회계법인인 기업은 "0"으로 표시한 감사인 유형변수 AUDIT SIZE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UDIT SIZE가 DA1과 DA2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수정 Jones모형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인 DA1과, 수정 Jones 모형에서 TA_{it-1}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DA2의 결과는 국내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Big4와 기타회계법인의 재량적 발생액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2]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

<표 4-2> Big4와 기타회계법인결과

독립변수	예상부호	모형1	모형2
		DA1	DA2
AUDIT SIZE (감사인 규모)	-	-0.015	-0.002
		-(0.374)	-(0.054)
OCF (영업현금흐름)	-	-0.067	-0.080
		-(1.821)***	-(2.012)***
ABSTAC (총발생액)	-	0.012	0.018
		(0.303)	(0.436)
OPN (감사의견)	-	0.020	0.018
		(0.607)	(0.563)
SIZE (기업규모)	+	0.035	0.028
		(0.898)	(0.718)
DEBT (부채비율)	+	-0.033	-0.033
		-(0.939)	-(0.961)
LIQUID (유동비율)	-	0.029	0.031
		(0.853)	(0.924)
ROA (총자산영업이익률)	+	0.158	0.161
		(4.455)***	(4.535)***
LOSS (당기순손실여부)	+	-0.182	-0.186
		-(4.846)***	-(4.959)***
CHGSALE (매출액증가율)	+	-0.188	-0.187
		-(5.709)***	-(5.672)***
수정 R^2 (F-값)		0.492	0.481
		(13.198)***	(13.045)***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속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t-값이다.

4.3. 가설 3 - Big4와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표 4-3>은 감사인 유형이 Big4인 기업은 "1", 감사반인 기업은 "0"으로 표시한 감사인 유형변수 AUDIT SIZE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UDIT SIZE가 DA1과 DA2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한 바와 같이 모두 10%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수정 Jones모형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인 DA1과, 수정 Jones 모형에서 TA_{it-1}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DA2의 결과는 [가설 3]을 지지하고 있어 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이 Big4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3> Big4와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예상부호	모형1	모형2
		DA1	DA2
AUDIT SIZE (감사인 규모)	-	-0.168	-0.160
		-(1.769)*	-(1.667)*
OCF (영업현금흐름)	-	-0.181	-0.180
		-(3.065)***	-(2.774)***
ABSTAC (총발생액)	-	0.324	0.339
		(5.017)***	(5.194)***
OPN (감사의견)	-	-0.048	-0.030
		-(0.681)	-(0.426)
SIZE (기업규모)	+	0.135	0.124
		(1.463)	(1.320)
DEBT (부채비율)	+	0.024	0.015
		(0.356)	(0.218)
LIQUID (유동비율)	-	0.179	0.166
		(2.620)**	(2.391)**
ROA (총자산영업이익률)	+	0.165	0.170
		(2.365)**	(2.402)**
LOSS (당기순손실여부)	+	-0.246	-0.233
		-(3.359)***	-(3.135)***
CHGSALE (매출액증가율)	+	-0.172	-0.181
		-(2.363)**	-(2.458)**
수정 R^2 (F-값)		0.393	0.388
		(11.889)***	(11.545)***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속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t-값이다.

4.4. 가설 4 -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표 4-4>는 감사인 유형이 기타회계법인인 기업은 "1", 감사반인 기업은 "0"으로 표시한 감사인 유형변수 AUDIT SIZE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UDIT SIZE가 DA1과 DA2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한 바와 같이 각가 5%, 10%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수정 Jones모형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인 DA1과, 수정 Jones 모형에서 TA_{it-1}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DA2의 결과는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4]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표 4-4>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예상부호	모형1	모형2
		DA1	DA2
AUDIT SIZE (감사인 규모)	-	-0.074	-0.083
		-(2.595)**	-(2.835)***
OCF (영업현금흐름)	-	-0.235	-0.246
		-(2.803)***	-(2.747)***
ABSTAC (총발생액)	-	0.003	0.014
		(0.106)	(0.424)
OPN (감사의견)	-	-0.027	-0.016
		-(0.944)	-(0.553)
SIZE (기업규모)	+	-0.023	-0.023
		-(0.736)	-(0.692)
DEBT (부채비율)	+	-0.021	-0.025
		-(0.734)	-(0.839)
LIQUID (유동비율)	-	0.092	0.089
		(3.316)***	(3.125)***
ROA (총자산영업이익률)	+	0.258	0.255
		(8.030)***	(7.661)***
LOSS (당기순손실여부)	+	-0.029	-0.039
		-(0.877)	-(1.121)
CHGSALE (매출액증가율)	+	-0.158	-0.163
		-(5.496)***	-(5.486)***
수정 R^2 (F-값)		0.623	0.613
		(16.865)***	(16.202)***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속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t-값이다.

4.5. 가설 5 - Big4+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표 4-5>는 감사인 유형이 Big4+기타회계법인인 기업은 "1", 감사반인 기업은 "0"으로 표시한 감사인 유형변수 AUDIT SIZE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UDIT SIZE가 DA1과 DA2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한 바와 같이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수정 Jones모형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인 DA1과, 수정 Jones 모형에서 TA_{it-1}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DA2의 결과는 Big4+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5]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Big4와 Non Big4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Big4와 기타회계법인과의 비교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재량적 발생액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Big4와 감사반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도 5%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비교한 결과도 유의도 5% 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Big4+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비교에서도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효과는 감사인 규모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을 감사반으로 확장하여 감사인의 품질을 비교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도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5> Big4+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예상부호	모형1	모형2
		DA1	DA2
AUDIT SIZE (감사인 규모)	-	-0.092	-0.098
		-(2.693)***	-(2.861)***
OCF (영업현금흐름)	-	-0.146	-0.155
		-(3.081)***	-(3.062)***
ABSTAC (총발생액)	-	0.028	0.038
		(0.780)	(1.029)
OPN (감사의견)	-	-0.016	-0.009
		-(0.500)	-(0.273)
SIZE	+	0.018	0.018

(기업규모)		(0.514)	(0.500)
DEBT (부채비율)	+	-0.023	-0.028
		-(0.712)	-(0.847)
LIQUID (유동비율)	-	0.079	0.077
		(2.462)**	(2.389)**
ROA (총자산영업이익률)	+	0.189	0.190
		(5.475)***	(5.429)***
LOSS (당기순손실여부)	+	-0.145	-0.147
		-(4.028)***	-(4.018)***
CHGSALE (매출액증가율)	+	-0.159	-0.164
		-(4.920)***	-(5.014)***
수정 R^2 (F-값)		0.582	0.569
		(15.324)***	(15.019)***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속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t-값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감사인 유형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감사인 유형은 외국 대형회계법인(Big4)과의 제휴 여부와 Big4외의 회계법인 그리고 감사반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표본은 제주도내 본사를 둔 기업 중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2월말 결산 기업 중에서 은행 및 금융관련 기업들을 제외한 기업들 중 실증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 및 시장관련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기업들을 선정하였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는 감사인의 규모를 근거로 감사인 규모집단별 차별적 감사품질에 대한 실증 연구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Big 감사인이 Non Big 감사인에 비하여 고품질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 연구들은 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결과 감사인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감사반으로 확대하여 감사품질의 차이 분석에서 감사인조직의 성격이나 규모가 이질적인 감사반의 경우 회계법인에 비하여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이 낮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감사반의 경우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원인은 감사반의 경우 회계법인과 달리 본

사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업무 지침서가 존재하지 않고 정기적인 감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개인 공인회계사들이 각자의 일에 종사하다 연말 감사시즌에만 모여 각자 담당한 감사만을 수행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같은 감사반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아 일관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국내와 달리 감사반이 높은 감사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제주도내의 감사시장 현황을 감안하여 감사인 유형구분을 달리 하여 감사인간의 재량적 발생액을 평가하였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는 도내 입주기업들에게는 감사인 선택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것이며,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사인에게는 고품질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문철, 황인태. 1998. 감사의 품질차이가 전기손익수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1-26.

나종길, 최기호. 2001. 이익조정에 대한 비적정의견성향과 감사품질. 회계학연구 제26권 제3호: 51-90.

나종길, 최관. 2003. 회계발생액과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 제28권 제1호: 1-31.

노준화, 배길수, 조성하. 2004. 감사인 유지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207-230.

노준화, 배길수, 전영순. 2003. 지정 감사인이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가? 회계학연구 제28권 제4호: 177-202.

문현주. 2001. 한정감사의견기업의 이익관리 검증. 한국경영학회 2001 12월: 189-212.

박용철. 1998. 한정의견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13권 제2호.

박종일, 이명곤, 원형연. 1999.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감사인의 감사품질분석. 회계와 감사연구 제35호: 289-379.

박종일. 2005. 감사보수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42호.

심한택. 2005. 감사인 유형별 회계이익과 재량적 발생에 대한 시장반응차이. 회계와 감사연구 제40호: 160-180.

이상수. 1999. 감사품질과 감사인의 보수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4권 제3호: 53-80.

이효익, 정영진, 김한수, 문상혁. 2002. 부수주의 적용과 감사인간의 품질차이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38호: 1-40.

정문종. 1994. 자유수임제와 감사인의 독립성. 회계학연구: 247-273.

정문종, 이제맹. 1996. 회계감사 품질대용치와 산업별 전문 감사인: 우리 회계감사 시장의 현황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5권 2호: 239-274.

정영무. 2009. 감사인 의무교체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은하. 2006. 감사인 유형에 따른 감사품질 실증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정석우. 1999. Big5 감사인과 Non-Big5 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 비교. 회계와 감사연구 제35호: 53-80.

정영진. 2005. 비적정의견 표명과 이익조정간의 관리성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40호.

최관, 백원선. 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 연구 제23권 제2호: 49-75.

최관, 이진화. 2000.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감사보수와 자유화를 전후로 한 실증분석.

최정호. 2005. 회계제도개선과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의 크기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 연구 제20권 제2호: 107-148.

최국현, 신안나. 2006. 신용등급평가가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1호: 125-158.

최국현. 2007. 감사인 규모 유형별 감사품질에 대한 실증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0권 제 4호.

황인태, 강선민, 정도진. 2008. Big4 감사품질의 우수성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되는가? 경영학연구 제38권 제1호: 1-34.

Becker. C., M. DeFond, J. Jiambalvo.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24.

Bradshaw, M,. S. Richardson, and R. Sloan. 1999. Earnings Quality and Financial Reporting Credibility: An Empirical Investigation. Working Paper.

Bradshaw, M,. S. Richardson, and R. Sloan. 2001. " Do Analysts and Auditor Use Information in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 (june):45-74.

Bartov, E., F. Gul, and J. Tsui. 2000. Discretionary-Accruals Models and Audit Qualifica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December): 3-37.

Bultler, M, A Leone and Willenborg. 2004. An Empirical analysis of auditor Reporting and its Association whit abnormal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 (june): 139-165

DeAngelo, L.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December): 183-199

Dechow, P. 1994. Accounting Earnings and Cash Flows as Measures of Firm Performance: The Role of Accounting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8(July): 3-42.

Dechow, P., S. Kothari, and R. Watt. 1998.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and

Cash Flows. Th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5: 133-168.

Dechow, p. and I. Dichev. 2002.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s. The Accounting Review 77(September): 35-59.

DeFond, M., and J. Jiambalvo. 1994. Debt Covenant Violations and Manipulationof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January): 145-179.

DeFond, M and K. Subramanyam. 1998. Auditor Chang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5(February): 35-68.

Francis, J and Krishnan 1999. Accounting Accruals and Auditor Reporting Conservatism.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6) Spring: 135.

Healy, P. and J. M. Wahlen. 1999. A Review of the Earnings management Literature and its Implications for Standard Setting. Accounting Horizon 13: 365-384.

Jeter, D. C., and L. Shivakumar. 1999. Cross-sectional Estimation of Abnormal Accruals Using Quarterly and Annual Data: Effectiveness in Detecting Event-specific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Vol 29. No.4: 299-320

Kasznik, R. 1999. On the Association between Voluntary Disclosure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 (Spring): 57-81.

Kothari, S., A. Leone, and C.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163-197.

Palmrose, Z. 1986. Audit fees and auditor size: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97-110.

Palepu, K. G. 1986. Predicting Takeover Targets: A Methodological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March): 3-35.

Pierre, K. St. and J. A. Anderson. 1984. An Analysis of the Factors Associated with Lawsuits against Public Accountants. The Accounting Review (April): 242-263.

Sarah, E. and B. Lewis. 1990. Determinants of Auditor Expertis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upplement): 1-28

Shivakumar, L. 1996. Essays related to equity offerings and earnings management. Dissertation. Vanderblit university.

Simunic. D., and M. Stein. 1996. The Impact of Litigation Risk on Audit Pricing: A Review of the Economics and the Evidence.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15 (Supplement): 119-134.

Sloan, R. G. 1996. Do stock prices fully reflect information in accruals and cash flows about future earnings? The Accounting Review 71(July): 289-315.

Subramanyam, K. 1996. The Pricing of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2(Aug-Dec): 249-281.

Watts, R. and J. Zimmerman. 1986. Positive Accounting Theor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NJ).

Willingham, J., and W. Wright. 1986. Financial Statement Errors and Internal Control Judgment.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Spring): 57-70.